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5. 3 선고 2012가단6220, 2012가단18179(병합) 판결 [건물철거
등·토지인도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건, 고은해

2. C

3. D

4. E

5. F(개명전 : G)

6. H

7. I

8. J

변 론 종 결 2013. 4. 16.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순천시 K 대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 ㄱ, ㄷ, ㄱ, ㄷ, ㄱ,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4㎡ 중 각 8분의 1 지분, 같은 도면 표시 ㅎ, ㄱ, ㄷ, ㄹ, ㅁ,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및 화장실 30㎡ 중 각 8분의 1 지분을 각 철거하고, 위 (다), (라) 부분 대지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ㅎ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대지 245㎡ 중 각 8분의 1 지분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 957,79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원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들은 2013. 3.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또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각 11,66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순천시 K 대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ㅋ, ㅌ, ㅍ, ㄷ1, ㄹ1, ㅁ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4㎡, 같은 도면 표시 ㅎ, ㄱ, ㄷ, ㄹ, ㅁ,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및 화장실 30㎡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299㎡를 인도하고, 30,69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3.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373,7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순천시 K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L와 M의 공동소유였으나, 망 L가 1981. 9. 27. 사망하자 원고가 1992. 12. 29.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는 16920분의 4224 지분권자가 되었다.

나. 망 N(1997. 3. 10. 사망)은 1962년경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망시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대신 일년에 며칠씩 원고 집안의 농사일을 도와 주었고, 이후 망 N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위 주택을 각 8분의 1씩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 ㄱ, ㄷ, ㄱ, ㄷ, ㄱ,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4㎡, 이 사건 주택의 부속건물인 같은 도면 표시 ㅎ, ㄱ, ㄷ, ㄱ, ㄷ, ㅎ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및 화장실 30㎡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 3. 1.부터 2013. 2. 28.까지의 임료는 30,693,000원 상당이고, 이후의 임료는 매월 373,750원(= 4,485,000원 /12)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P의 임료감정결과, 감정인 Q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 H

망 N이 원래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1974년경 원고의 백부인 R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순천시 S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76년경 원고의 부친인 망 L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S 토지를 교환하였고, 이후 망 L가 위 S 토지에 제각을 건축하였다.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무가 있다.

3.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형태

별지